

2024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4년 7월 1일 부터
2024년 9월 30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의왕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이 응 천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9.13.	66명	1) 정관 변경의 건 2) 기타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7.24.	12명	1) 탈퇴조합원 지분 환급의 건 2)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의의 건 3) 지사무소 통폐합 결정의 건
2024.08.07.	12명	1) 지사무소 통폐합 결정의 건
2024.08.28.	12명	1) 탈퇴조합원 지분 환급의 건 2)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의의 건 3) 임원 여신거래 승인의 건 4) 2024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건 5) 직제규정 변경의 건 6)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
2024.09.25.	12명	1) 탈퇴조합원 지분 환급의 건 2)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의의 건 3) 간부직원 임면의 건 4) 기타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본점	16069	의왕시 사천1길16(왕곡동)	453-2301	
부곡지점	16096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6(삼동)	461-2304	
오전지점	16053	의왕시 모락로 16, 206호 (오전동, 현대프라자)	453-2305	
청계지점	16013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청계동)	426-2307	
고천지점	16058	의왕시 경수대로262, 245호 (오전동, 서해그랑블)	454-5353	
내손지점	16026	의왕시 내손중앙로 45-5(내손동)	421-3300	
삼동지점	16091	의왕시 부곡중앙로 48, 2층 (삼동, 삼원빌딩)	461-4164	9월30일 영업종료
포일지점	16004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포일동)	449-4600	
영농자재센터	16065	의왕시 백운로 16(오전동)	452-9516	

나. 인원 현황

구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고
임 원	조합장	1	1		
	이사(상임)	9(1)	9(1)		
	감사(상임)	2(1)	2(1)		
직 원	지도·경제	44	45	1	
	신용	59	57	-2	
계		115(2)	114(2)	-1(0)	

3. 정관변경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광고방법)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u> 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광고방법) ----- ----- ----- ----- -- <u>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u> -.
제18조(출자) ① (생략) ② 조합원은 <u>200좌이상</u> 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 조합원은 <u>1,000좌이상을 출자 한다</u> .	제18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0좌 이상</u> ----- -. ----- ---- <u>1,000좌 이상을 출자한다</u> .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u>10이내</u>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u>10 이내</u> ----- -----.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u>품목조합연합회</u> 또는	제21조(우선출자) ① ----- ----- ----- ----- -----. ----- <u>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u>

현행	개정안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생략) 제46조(대의원회) ①·②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사그네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고정 영농회 2명 3.왕림통미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4.당뿌리 영농회 1명 5.오매기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6.등치골 영농회 1명 7.전주 영농회 1명 8.웃우물원골 영농회 2명(남성1명,여성1명) 9.교동 영농회 1명 10.창말금천신촌 영농회 2명 11.장안 영농회 1명 12.북관사 영농회 2명(남성1명,여성1명) 13.남관사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14.월암 영농회 2명(남성1명,여성1명) 15.도룡 영농회 2명 16.월곡 영농회 1명 17.상초평 영농회 4명(남성3명,여성1명)	<u>회"라 한다</u>)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6조(대의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1.사그네 영농회 4명(남성3명,여성1명) 2.고정 영농회 1명 3.왕림통미 영농회 4명(남성3명,여성1명) 4.당뿌리 영농회 1명 5.오매기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6.등치골 영농회 1명 7.전주 영농회 1명 8.웃우물원골 영농회 2명(남성1명,여성1명) 9.교동 영농회 1명 10.창말금천신촌 영농회 1명 11.장안 영농회 1명 12.북관사 영농회 1명 13.남관사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14.월암 영농회 2명(남성1명,여성1명) 15.<u>도룡월곡</u> 영농회 2명 16.<u>상초평</u> 영농회 4명(남성3명,여성1명) 17.<u>하초평</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현행	개정안
18. <u>하초평</u> 영농회 2명	18. <u>학 현</u> 영농회 2명
19. <u>학 현</u> 영농회 2명	19. <u>의 일</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0. <u>의 일</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0. <u>능 안</u> 영농회 2명
21. <u>능 안</u> 영농회 1명	21. <u>청 계</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2. <u>청 계</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2. <u>한 직</u> 영농회 2명
23. <u>한 직</u> 영농회 2명	23. <u>원 터</u> 영농회 1명
24. <u>원 터</u> 영농회 1명	24. <u>포 일</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5. <u>포 일</u>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	25. <u>양지편</u> 영농회 1명
26. <u>양지편</u> 영농회 2명	26. <u>갈 미</u> 영농회 4명(남성3명,여성1명)
<u>27. 갈 미 영농회 3명(남성2명,여성1명)</u>	<삭 제>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u>임원</u> 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u>선거기간중</u> 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② ----- ----- -. ----- <u>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u> ----- <u>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u>	④ <u>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u>

현행	개정안
<u>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u> ⑤·⑥ (생략)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1.~11.(생략) 12. 가. 나. 다.(생략)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 료: <u>20만원</u> 이상 ②·③ (생략) <u><신설></u>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 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u>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1.~11.(현행과 같음) 12. 가. 나. 다.(현행과 같음) 라. ----- ----- -: <u>10만원</u>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u>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현행	개정안
<u>선거일공고일 이후</u>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생략)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u>선거기간 중 조합</u>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⑤ (생략)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u>우리조합</u>·<u>다른조합</u>·<u>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u>·<u>중앙회</u>·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u>상임감사위원장</u>을 말한다), <u>우리조합</u> 자회사(<u>공동사업법인</u>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	<u>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u>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조합</u>-----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피선거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우리조합</u> ·<u>다른조합</u>·<u>연합회</u>·<u>중앙회</u> --- ----- ----- ----- ----- ----- <u>감사위원장</u>----- ----- <u>조합</u> <u>공동사업법인</u>----- -----

현행	개정안
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결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ㄴ 4. (생략) ② (생략)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ㄴ 8. (생략) <u>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u> 10. (생략) 제72조(<u>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u>) ① ㄴ ② (생략) <u><신설></u> ③ ㄴ ④ (생략)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 ----- ----- ----- -----, ----- ----- ----- ----- ----- 3. ㄴ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선거공고) ----- ----- -----. 1. ㄴ 8. (현행과 같음) <u><삭제></u> 10. (현행과 같음) 제72조(<u>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u>) ① ㄴ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ㄴ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

현행	개정안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u>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u>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u>조합원이어야 하는</u>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	-----. 1. (현행과 같음) 2. <u>전자우편</u>----- ----- ----- ----- -- 제100조(피선거권)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u>조합원인</u> ----- ----- ----- ----- -----. 3. (현행과 같음) 4. -----

현행	개정안
기 위하여 임기 중 <u>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u> 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조합원이어야 하는</u>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u>이사정수</u>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u>조합원이어야 하는</u>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4. (생략) 5. <u>우리조합</u>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u>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u>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조합원이 아닌</u> 이사의 직을 사	----- <u>이사의 직을 사직함</u> ----- ----- <u>그</u> -----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u>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u>조합원인</u> ----- 3. 4. (현행과 같음) 5. <u>다른 조합</u> ----- <u>이사의 직을 사직함</u> ----- - <u>그</u> -----

현행	개정안
직한 사람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u>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4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u>1개</u>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u><단서 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u><단서 신설></u>	-----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 ----- ----- ----- ----- --- 제114조(선거절차) ① ----- ----- ----- ----- <u>단수 또는 복수</u>-----. <u>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u> ② ----- ----- -----. <u>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u>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생략)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 ----- ----- ----- 5. (현행과 같음)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생략) ② 1.~2.(생략) 3. 가. 나. 다.(생략)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u>10만원</u> 이상 4.(생략)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1.~2.(현행과 같음) 3. 가. 나. 다.(현행과 같음)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u>5만원</u> 이상 4.(현행과 같음)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 ----- ----- ----- -----

현행	개정안
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생략)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

현행	개정안
<u>제10호</u>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u><신설></u>	호, <u><삭제></u>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u>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u>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창립 기념품 지급

- 의왕농협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합원님께 기념품(전자교환권)을 전달하였습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준 전조합원)

☐ 조합원 실태조사

- 정관 제 11조에 의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조합원 복지증진 물품 발송

- 7월 10일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합원님께 한돈정육세트를 발송하였습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준 전조합원)

☐ 조합원 김장배추재배 교육

- 8월 23일 118명의 교육 신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김장배추재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합원 배추모종 지원

-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조합원을 대상으로 김장배추모종 1판(CR명품, 불암3호, 불암플러스)을 지원하였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 사업추진 현황

- 2024년 9월말 현재 경제사업 실적은 13,720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대비 73.21%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1% 성장하였습니다.

□ 사업부문별 추진 현황

- 구매사업은 1,597백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4% 성장하였으며, 사업계획 대비 84.20% 달성하였습니다.
- 판매사업은 473백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0% 성장하였으며, 사업계획 대비 60.02% 달성하였습니다.
- 마트사업은 11,643백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8% 성장하였으며, 사업계획 대비 72.56% 달성하였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 상호금융예수금

- 예수금 잔액은 2024년 9월말 현재 1조 1,32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3% 축소되었으며, 사업계획 대비 95.70% 달성하였습니다.
- 예수금 평잔은 2024년 9월말 현재 1조 1,32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8% 성장하였으며, 사업계획 대비 97.16% 달성하였습니다.

□ 상호금융대출금

- 대출금 잔액은 2024년 9월말 현재 8,02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6% 축소되었으며, 사업계획 대비 88.51% 달성하였습니다.
- 대출금 평잔은 2024년 9월말 현재 8,40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9% 축소되었으며, 사업계획 대비 93.65% 달성하였습니다.
- 상호금융대출금 연체비율은 2024년 9월말 현재 4.94%로 전국평균(4.17%) 대비 0.77%p 높으며 건전여신 추진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업

☐ 여성복지과 활동 현황

- 7월 31일 의왕농협 주부대학동문 봉사단에서 충청남도 논산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였습니다.
- 9월 12일 의왕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행사에 주부대학 동문회 임원들이 참여하여 우리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봉사를 위해 일손을 보태었습니다.
- 주부대학 동문회(고향주부모임)에서는 하나로마트 봉사 활동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두발로 Day 행사 개최

- 9월 28일 의왕농협 주관으로 백운호수에서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위한 두발로 Day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 감	성장률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18,740	13,720	73.21	13,306	413	3.11	18,177	-4,457	-24.52
판 매		788	473	60.02	422	51	12.00	798	-325	-40.73
구 매		1,897	1,597	84.20	1,593	4	0.24	1,813	-215	-11.89
마 트		16,046	11,643	72.56	11,284	359	3.18	15,554	-3,911	-25.14
가 공										
기 타		8	6	72.16	6		-3.46	12	-6	-48.36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183,402	1,132,517	95.70	1,143,094	-10,577	-0.93	1,106,841	25,676	2.32
	평잔	1,165,236	1,132,147	97.16	1,130,073	2,074	0.18	1,135,936	-3,789	-0.33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906,846	802,684	88.51	893,435	-90,751	-10.16	865,540	-62,855	-7.26
	평잔	897,099	840,110	93.65	892,687	-52,577	-5.89	891,334	-51,223	-5.75
보험료		8,233	6,484	78.76	6,549	-65	-1.00	8,627	-2,143	-24.84

※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 창고, 이용,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19,627	I .유동부채	23,358
현금	5,613	외상매입금	194
외상매출금	335	단기차입금	
재고,생물자산	851	기타유동부채	23,165
기타유동자산	12,828	II .금융업예수금	1,132,517
II .금융업예치금	378,331	III .금융업차입금	4,375
III .금융업대출채권*	780,447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1,377
V .비유동자산	61,061	장기차입금	
투자자산	17,213	기타비유동부채	1,377
유형자산	40,931	부채 합계	1,161,627
무형자산		I .출자금	25,703
기타비유동자산	2,918	II .자본잉여금	4,237
		III .자본조정	-227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699
		V .이익잉여금	32,428
		자본 합계	77,839
자산 총계	1,239,466	부채와 자본 총계	1,239,466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9월말 (A)	'24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62,787	58,150	-4,637
영업비용	44,046	40,564	-3,482
매출총이익	18,741	17,586	-1,155
신용사업	16,515	15,307	-1,209
경제사업	2,226	2,280	54
판매비와관리비	11,507	11,057	-450
영업손익	7,235	6,530	-705
교육지원사업준비	2,178	2,368	190
영업외손익	388	1,643	1,255
법인세차감전손익	5,445	5,805	360
법인세비용	-2		2
당기순손익	5,447	5,805	358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